

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시행규칙

(제정) 2009-05-18 규칙 제 3378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조례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인증신청 대상) 「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

제5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, 인증신청 대상 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.

1. 우수 공공시설물 인증신청서 제출일 현재 제작 또는 설치완료 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공공 시설물
2. 경기도(이하 "도"라 한다), 도 소속행정기관, 도내 공공기관, 시·군 등이 시행한 사업결과 물로서 인증신청서 제출일 현재 설치 완료하였거나 설치예정인 공공시설물

제3조(인증제외대상)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"그 밖에 경기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.

1. 2회 이상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심사에서 제외된 시설물
2. 심사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, 제출한 신청서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
3. 그 밖에 우수시설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

제4조(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) ① 인증심사위원회는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심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인증심사위원회는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심사를 비공개로 하며 인증심사에 참가한 사람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제5조(인증 및 시상) ① 도지사는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을 하였으면 해당 시설물의 인증일 부터 20일 이내에 인증내용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한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중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상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서) 조례 제3조제1항의 우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까지이다.

제7조(인증마크)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마크는 별지 제2호로 한다

제8조(지침)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